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November 2021



삼일회계법인

Contents

GAAP

04 2022년 의무적용 & 2021년 조기적용 가능한 개정 기준서

GAAS

09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금융감독원)

12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TAX

15 최신 세무뉴스

17 최신 세무예규판례

Governance

20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한국거래소)

Hot Topic

23 美 연준의 테이퍼링, 그 의미와 영향은?

01

GAAP

회계



2022년 의무적용 & 2021년 조기적용 가능한 개정 기준서

다음의 개정 기준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기준서이며, 2021년 재무제표 작성시에 조기적용 가능합니다.

당기에 조기적용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당기에 조기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30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가 제정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당기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 주요 내용

- 기업이 의도된 용도로 자산을 준비하는 동안 생산된 품목(예: 시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모든 수입 금액은 관련 생산 원가와 함께 손익에 인식.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함
-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과를 평가할 때 '자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에 따라 자산은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경영진이 기대하는 운영상의 성과 수준을 달성하기 전이라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 경과규정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취득이 완료되는 유형자산에 소급 적용 (이익잉여금 조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 주요 내용

-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다음 두가지로 구성
 - 계약이행을 위한 증분원가 (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
 - 계약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 (예: 계약이행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배분액)
- 또한,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계약에만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도록 하였음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
-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에 반영하며,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음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 주요 내용

- 사업결합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조할 개념체계를 구 개념체계에서 신규 개념체계(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개정
- 다만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있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인식’의 예외규정 신설
 - 기준서 제1037호 및 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 범위에 있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식될 부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대신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적용하도록 함
- 우발자산은 사업결합에서 인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에 취득일이 도래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 채택 기업인 종속기업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IFRS를 늦게 채택하는 경우의 면제항목에 지배기업이 보고한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의 누적 환산 차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판단함.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
-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제외되며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 가능.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된 금융부채에 적용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존의 적용사례 13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서 받은 리스 개량 변제액을 리스 인센티브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기재. 한편, 리스 개량 자산이 리스 기간에 리스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지(리스 이용자의 자산), 아니면 그 리스 기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리스 제공자의 자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그 리스 이용자만 사용한다면 리스 개량 변제액은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명칭과 관계없이 리스 제공자의 자산이라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리스 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과 일관되도록 해당 문구를 삭제함
-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하나의 현재가치 평가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으며, 동 기준서 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일관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
-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세후 현금흐름은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고, 세전 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회계기준원 관련 공지사항 참조: [\(2020-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금융감독원)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 심사·감리의 종류 | 정의 | 선정사유 예시 |
|-----------|--|--|
| 표본 |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 등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식위험 분석 등 · 심사·감리 후 경과기간 고려 무작위 추출 ·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회계이슈 점검 |
| 혐의 |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여 심사 등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 감독·검사 등의 업무수행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인지 · 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

2. 혐의 심사·감리 실적

- **실시현황**
 - 최근 5년간 총 229사(상장회사 168사, 비상장회사 61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
 -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

- 연도별 혐의심사·감리 실적 (단위: 사)

| 실적 | 연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상반기 | 계 |
|-------|---------|------|------|------|------|------|-------------|-----|
| | 총결 회사 수 | | 41 | 18 | 29 | 61 | 57 | 23 |
| 상장회사 | | 22 | 14 | 23 | 50 | 44 | 15 | 168 |
| 비상장회사 | | 19 | 4 | 6 | 11 | 13 | 8 | 61 |

- 착수경위: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가 18.4%(42사), 심사·감리중 인지가 14.0%(32사) 순임

□ 지적률

- 5년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지적률은 90%(229사 중 208사 지적)이며,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지적률이 높은 편임
-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임

3. 위반내역 분석

□ 위법동기

- '19년 초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종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하여 종과실 비중은 감소하고 과실 비중은 증가
- 혐의심사·감리 결과 지적회사의 위법동기 (단위: 사, %)

| 위반동기 | 연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상반기 | 계 |
|------|----|------|------|------|------|------|-------------|--------|
| | 고의 | | 9 | 4 | 6 | 6 | 11 | 8 |
| 종과실 | | 17 | 10 | 11 | 12 | 3 | 6 | 59 |
| 비중 | | 45.9 | 66.7 | 40.7 | 24.0 | 5.4 | 26.9 | (28.4) |
| 과실 | | 11 | 1 | 10 | 32 | 42 | 9 | 105 |
| 비중 | | 29.7 | 6.7 | 37.0 | 64.0 | 75.0 | 39.1 | (50.5) |

-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

□ 위반유형

- 당기손익·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A 유형)하는 중요한 위반회사는 208사 중 172사(82.7%)로서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A 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으로 구성

4. 조치현황

-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상장회사 146사, 기타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및 금융회사 56사)를 조치¹⁾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²⁾
- (회사) 63사에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조치.
-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이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

5. 시사점

-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 (2017.11 포상금 지급한도상향(1억 → 10억), 2020.3 익명신고건 접수처리 실시, 2020.5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포함)
-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예정
-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자진수정 등)로 신속하게 종결,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

1) (비조치 6사) 타 조치회사와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

2) (감사인 비조치 74사) 재무제표 심사 후 종결, 분·반기보고서 위반 또는 위반회사가 외국법인 등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

1. 개요

- 주기적지정제 시행 3년 경과로 인하여 2021년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지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사 및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감사인 지정 상장사 (개/비중):

'17 (170/7.8%) ▶ '18 (242/12.7%) ▶ '19 (807/34.7%) ▶ '20 (1,060/44.5%) ▶ '21 (1,253/51.6%)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21.10.18 발표) – [\(보러가기\)](#)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회계법인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제재절차)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접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지정제외접수 부과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접수 부과 및 징계부과

- (센터확대) 신고센터(‘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명칭 변경)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기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

*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 활성화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 가능
- 협의회 위원에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운영방법은 구체화하여 공표 예정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 발부 및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기준에 명문화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 예정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모범기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예방 및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요청 가능
-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조정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감사시간 적용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기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완료 예정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 후 2022.1.1부터 신청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는 2021.10.18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함

03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2021.11

최신 세무뉴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59조원(개인 9.4조원, 법인 49조 6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5% 감소하였다고 밝힘. 신고인원 증가이유는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원 → 5억원)와 '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 이외에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의 결과로 보았으며, 신고금액 감소 이유는 저금리구조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축소로 분석함. 국세청은 향후 계획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제시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 30.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함.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힘.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함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인 신종 호황업종은 ①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이며, 불공정탈세자는 ③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임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조 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정부 예측치(7조 1천억원 감소)보다 1조 3천억원 적은 수치임.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이라는 조세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투자·소비 회복 지원,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현황,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하여 세법개정안 심사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음

최신 세무예규판례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는 지배주주등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한정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기법 §47의 4 ③ 4호)

이번 심판례에서 처분청은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인세 결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은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증여의제이익 변경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고,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조심2021서782, 2021. 10. 21.)

이번 심판례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는 지주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에서 합병법인(지주회사)은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회사 주식을 승계 받고 해당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동 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사안의 쟁점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과 합병등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2021. 10. 12.)

과거 국세청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는 바,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법인세과-103, 2010. 2. 2. 등)

04

Governance 감사위원회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사¹⁾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하여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함
-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²⁾는 공시 의무화 첫 해인 '19년 54.5%에서 '20년 70.2%, '21년에는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했고,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자산총액 및 시가총액 규모별 기재충실도 현황

| 자산 규모 | 기재충실도 | | 시총 규모 | 기재충실도 | |
|--------|-------|------|-------|-------|------|
| | '20년 | '21년 | | '20년 | '21년 |
| 10조 이상 | 76% | 81% | 5조 이상 | 75% | 82% |
| 5조 이상 | 74% | 83% | 1조 이상 | 66% | 80% |
| 2조 이상 | 68% | 76% | 1조 미만 | 62% | 76% |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³⁾의 준수율 평균도 '19년 및 '20년 각각 47.9%,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폭이 확대함
-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고,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1) '21년 지배구조보고서('20사업 연도) 의무공시 대상 기업(215사) 중 비금융사(175사)

2)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하여 산정

3)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 중 계량화 가능한 22개 항목을 분석

1. 주주

-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 준수율은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함
- 전자투표 실시 항목은 COVID-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며,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상승(+ 20.8%p)하여 배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

2. 이사회

- 이사회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 및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외이사평가활용 및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함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28%) 및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음

* '20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4가지 정책을 모두 명문화한 경우만 준수로 인정

3. 감사기구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4%), 감사위원 교육(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도 전반적으로 개선됨
-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9.1%) 항목의 경우 아직 준수율이 낮고 증가 추세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1년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하였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20년 143건에서 '21년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많이 감소함
- 한국거래소는 '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임

| 구분 | 조치 내역 | | | 조치 건수 합계 |
|------|---------|----------------|-------|----------|
| | 정정공시 요구 |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서 발송 | 유선 통보 | |
| '21년 | 20건 | 101건 | 34건 | 155건 |
| '20년 | 28건 | 143건 | 13건 | 184건 |

*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 점검 결과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러가기\)](#)

Hot Topic



美 연준의 테이퍼링, 그 의미와 영향은?

1. 테이퍼링 개요

- 출구전략의 일환인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축소)은 2013년 5월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 도중에 언급하면서 공론화된 말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QE(양적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동안 매입하던 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장내 유통되는 통화량을 축소하는 정책을 의미함

2. 다가오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COVID-19가 가져온 제2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 COVID-19로 2020년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연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한 바 있음. 2015년 이후 5년만임

- * 2020년 3월, 기준금리 기준 1.00% ~ 1.25%
... 0.00%~0.25%로 1%pt 인하
- * 유동성 공급증가를 위해 7,000억\$ 규모 국채와 MBS 매입으로 양적완화시대 재개막
... 현재 매월 국채 \$800억, MBS \$400억 등 총 \$1,200억 규모 채권 매입 증임

-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 증가, 워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고려가 시작됨
- 테이퍼링 경로(9월 FOMC 회의록): 금년 11월 or 12월 중순 시작한 후 내년 중반 종료

- '21년 7월 FOMC에서는 제로금리 유지, 채권 매입 지속 결정과 동시에 물가와 고용 목표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양적완화 정책 변화를 시사했음
- 9월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시작 및 종료 시점과 축소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 만약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개시를 결정한다면 매입 규모 축소는 11월 or 12월 중순에 시작하여 '22년 중반 마무리할 가능성 언급 (단 경제발전이 예상과 상당히 다를 경우(고용 및 경기 회복 추세) 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함)
- 한편 연준위원들의 금리전망 점도표상 금리인상 시점은 2022년으로 앞당겨짐
* 전체 18명 중 9명 2022년 금리인상 시작 예상 (6월 점도표에서는 7명)

- 어느정도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오히려 통화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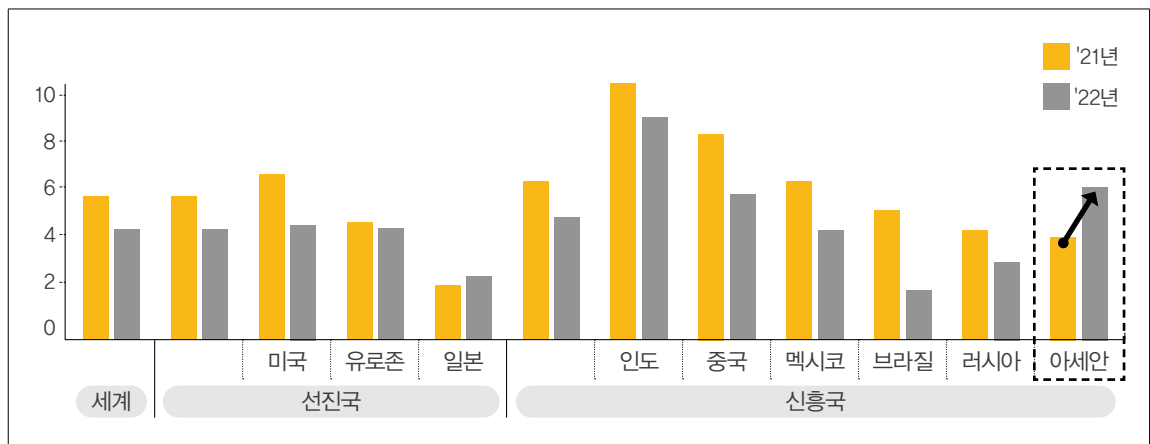
- 9월 FOMC 수정경제전망치를 보면, 금년과 내년의 미국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4% → 4.2% / 2.1% → 2.2%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
- 향후 코로나 관련 수급 불균형(유가 및 상품가격 등)이 진정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3. 2013년 테이퍼링 시기와는 다른 현재: 신흥시장 자금이탈 과거대비 제한적일 전망

- ① 신흥국 경기는 선진국과 동조화되며 개선 중
- ② 연준이 자산매입 속도를 줄여도 약 3개월 간은 QE3당시('12년 9월~'14년 10월) 월간 매입량 보다 많음
- ③ 미국과 상관없이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지속
- ④ 다만 일부 중남미, 신흥유럽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 필요

| 구분 | 2013년 | 현재 |
|-------|--|--|
| 경기 | <p>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비동조화 (선진국 빠른 확장 vs. 신흥국 정체)</p> <p>* 부진한 수출</p> | <p>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반등 동조</p> <p>* 신흥국 주도의 수출경기 회복 (신흥국 YoY + 22%, 선진국 YoY + 11%)</p> |
| 통화 정책 | <p>· 연준, 매월 국채 450억달러, MBS 400억달러 매입 vs. ECB 자산 감소</p> | <p>· 선진국 중앙은행 자산매입 속도 줄여도 과거 월간 매입량 상회(1.4배)</p> <p>· ECB, BOJ는 매입 지속: 테이퍼링 요원</p> |

- IMF,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 , YoY)



* 연간으로는 견고한 대외 수요가 성장률 뒷받침 → 신흥국 경제는 '21년 6.3%, '22년 5.2% 성장 전망

4. 테이퍼링 개시 전후 영향 점검 (환율 중심)

- 테이퍼링은 세계 시장에 나눠져 있던 자금의 미국 회수되는 것을 의미함.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됨. 그렇다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되면서 자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며 신흥국 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기와 언급에 전세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음
- 과거 美 연준의 테이퍼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美, 국채매입 규모 축소 ▶ 달러공급 감소 ▶ 달러 강세 시작 ▶ 외국인 투자자 달러 매입을 위한 원화자산 매각 ▶ 위험자산(주가, 부동산 등) 가격 하락 가능성 ▶ **달러강세 vs. 원화 약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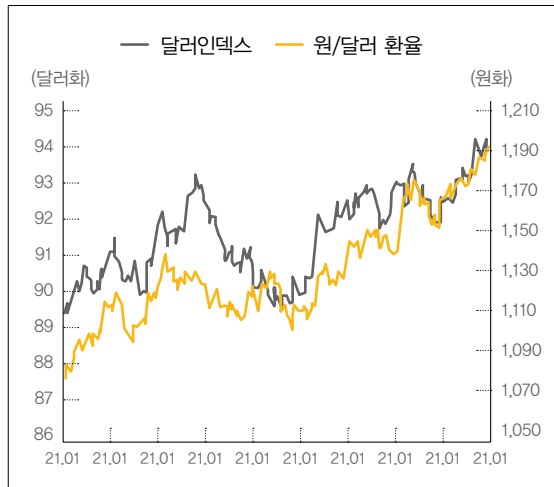
- 미국 출구전략 개시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 금융, 외환, 실물



- 금번 테이퍼링 시행 이후 미달러화 초강세 지속 가능성은 2014년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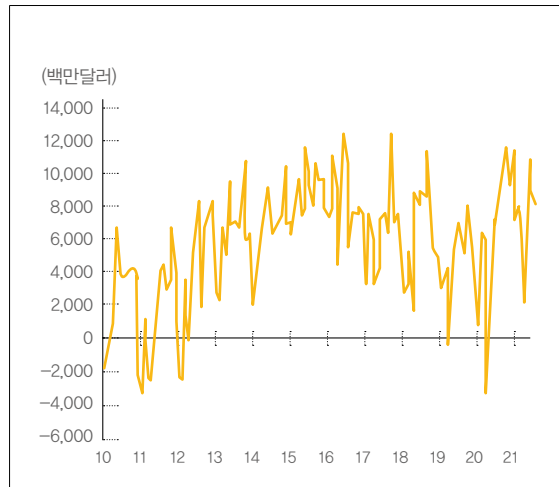
- 미 달러화는 6월 FOMC를 기점으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검토에 착수하면서 강세로 전환함. 이후 테이퍼링 시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① 유로존의 미국대비 상대적으로 느린 경기회복 속도 ② 델타변이 영향 ③ 중국 경기 둔화세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그러나 내년에는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와 치료제 개발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달러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임
- 특히 원화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2014년 보다 양호한 상황에서
 - ① 선제적인 금리인상(8월, 0.5% → 0.75%로 25bp 인상) 및 11월 추가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등으로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감소
 - ② 한국 경상수지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흑자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19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원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한·미 금리차이에 의한 자금 유출우려 및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전망이다

• 미달러 강세: 6월 FOMC 이후



* 자료: BOK, FED

• 한국 경상수지



* 자료: BOK

□ 이번에 제시된 테이퍼링 속도라면, 경제규모 대비 시중 유동성 비율은 2022년 1분기에 고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 9월 FOMC에서 제시된 테이퍼링 속도는 2014년 월간 100억 달러에 비해 빠름 따라서 GDP대비 시중 유동성 비율은 2022년 2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경제규모 대비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면 위험자산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높음

• Appendix: 미국 양적완화정책 영향 점검

| | | | | |
|----------|-----|------------------|------------------|---|
| 미국의 양적완화 | 미국 | 장기금리 하락 | 주가(집값) 상승 | · 소비 증가 · 기업투자증가 · 실업률 하락 · 경기회복 |
| | | 달러가치 하락 | 수출경쟁력 강화 | |
| | 부작용 | 원자재(원유 포함) 가격 급등 | | 물가상승 (자산거품 형성) |
| | 한국 | 해외자금 유입 | 주가, 상품, 부동산 가격상승 | 인플레이션 자산거품 형성 |
| | | 원화 강세 | 수출경쟁력 약화 | 무역수지 악화 |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Governance

하 미 혜, Director
 +82 2 709 8599
 mihye.ha@pw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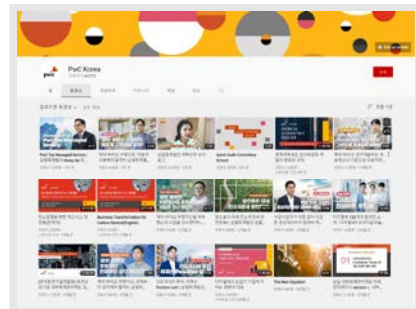
SRC

이 은 영, Director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www.samil.com

S/N: 2111A-NL-007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